

# Yeosu Web Contents

2024년 04월 27일 05시 15분



# 목차

|                             |   |
|-----------------------------|---|
| 목차                          | 2 |
| 여수시에 바란다(구)                 | 3 |
|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이 10분이라니 말이 됩니까? | 3 |

##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이 10분이라니 말이 됩니까?

2017.05.11 조회수 892 등록자 김OO

시장님.

다른 지자체들은 5분도 실효성이 없다고, 5월 1일부터 단속 기준을 1분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월부터 적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기사는 5월 1일부터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이 10분이라는걸 알고 계십니까?

더군다나 요즘 관광도시로 알려져서 주말/평일 가리지않고 진짜 복잡합니다.  
불과 몇년전, 그 한적하고 조용한 여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이 10분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수시 도로에는 '생활불편앱'을 통해서 신고하라고 하라는 안내가 전광판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보여주기식 아닙니까?

5분도 길어서 진짜 너무한다 싶은 차들도 신고하기 귀찮아질 정도인데,  
10분이라는 개인적인 시간을 소비하고 신고할 그런 여유가 있을것 같습니까?

시장님은 출/퇴근 하면서 10분이라는 개인적인 시간을 소비하면서까지 불법주정차를 신고하시겠습니까?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35조를 보면  
황색실선 주정차는 단속 대상이라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단속구간이 아니면 단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단속구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속도 안하고,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된것도 처리하지 않으려면  
그냥 흰색실선으로 변경하여 누구든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바랍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이 10분이라니 말이 됩니까 끝에 대한 답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11 14:52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향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접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취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생활불편신고앱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는 주차 시간과 관계없이 신고가 접수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해 주시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의 차이가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07:00~22:00까지이며, 황색복선(횡단보도, 시내버스정류장, 도로모퉁이 등)은 시간에 관계없이 즉시 단속을 하고 황색 실선은 10분간의 유예 시간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시에는 해당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지 정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5분이상의 시차를 둔 2매 이상의 사진이 필요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금번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고하신 불법 주·정차 차량은 금지구간에 주차를 못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해당구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여수시청 교통과(659-4162)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교통과(☎659-4162) 담당자 강수정 / 주차계도팀장 김종관 / 교통과장 김용필  
여수시장  
감사합니다.

목록

댓글(0)

댓글은 실명인증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실명인증

이전글

금오도 마을버스 안전조치 요망

다음글

안전띠 단속

COPYRIGHT © YEOSU. ALL RIGHTS RESERVED.

# Yeosu Web Contents

